

의안번호	2214909
의 퇴 인	남인순의원
회 답 일	2026.2.5.
추계번호	25C6723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 (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)	-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제2항) 7의2.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한 보건의료사업계획	의무규정
2	안 제52조의2 (성차의학 진흥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차의학(성별의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)의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	재량규정
3	안 제53조 (보건의료 통계·정보 관리시책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정보를 수집·관리하는 경우 성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 (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)	- 기수행 사업 - 보건복지부는 2025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(9,043만원), 개정안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반영한 계획은 용역비 내에서 반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52조의2 (성차의학 진흥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53조 (보건의료 통계·정보 관리시책)	

2. 상세 사유

- 성차의학 진흥, 보건의료 통계·정보 관리시책(안 제52조의2·제53조)
 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차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보건의료 통계 수집 및 관리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
 - 개정안에 따라 성차의학의 진흥 및 보건의료 통계 사업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법제화할 경우 정부의 보건의료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, 조문이 선언적이고 일부 통계사업은 이미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되고 있으므로, 현시점에 사업 확대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움
 - 보건복지부는 “정책기반 구축” 사업을 통해 정책기반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, 이 중 “보건의료 질 통계”, “의료서비스 경험조사” 등 환자 단위의 통계 자료들은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하고,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를 이미 공표하고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